

의안번호	2115281
의 퇴 인	김태호의원
회 답 일	2022. 04. 26.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2115281)

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재정수반요인	추계 여부	비고
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(안 제4조)	○	내국세 총액의 19.24%에서 2023년에는 21.62%, 2024년부터는 24%로 단계적 상향 조정

II. 비용추계 결과

□ 추가재정소요 : 향후 5년간 총 70조 3,885억원 증가

[표]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방재정수입: 2023~2027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	합 계	연평균
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(안 제4조)	70,757	147,988	154,795	162,221	168,123	703,885	140,7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1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2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	2
2.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	2
3. 추계 결과	3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에는 21.62%, 2024년부터는 24%로 단계적 상향조정하는 경우 지방재정수입은 2023년 7조 757억원, 2027년 16조 8,123억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70조 3,885억원(연평균 14조 777억원)이 증가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중앙정부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방재정수입: 2023~2027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	합 계	연평균
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(안 제4조)	70,757	147,988	154,795	162,221	168,123	703,885	140,7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-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(안 제4조)
 -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¹⁾ 총액의 19.24%에서 2023년에는 21.62%, 2024년부터는 24%로 단계적 상향 조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

- 국회예산정책처의 내국세수 전망(2021.10)²⁾을 바탕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이전재원 증가분을 추정
- 개정안은 2023년부터 상향조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

1)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상속세, 증여세, 개별소비세

2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」, 2021년

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
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%를 제외한 금액임
- 지방교부세 재원에 지방교부세율 인상분을 곱하여 지방재정수입 증가분을 산출

2.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(안 제4조)

-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개정안의 대상인 지방교부세 재원은 2023년 299.5조원, 2027년 355.4조원 등으로 전망
 - 현행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%를 제외한 금액의 19.24%임
 - 개정안은 교부세율을 2023년 21.62%, 2024년부터는 24%로 단계적 상향 조정

[표 2] 지방재정수입 증가분(2023~2027년)

(단위: 조원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
내국세(①)	299.5	313.1	327.4	343.0	355.4
개별소비세 담배분×45%(②)	2.2	2.2	2.2	2.2	2.2
지방교부세 재원(③=①-②)	297.3	310.9	325.2	340.8	353.2
교부세율 인상분(%) (④)	2.38	4.76	4.76	4.76	4.76
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변화 (⑤=③×④교부세율 인상분)	7.0757	14.7988	15.4795	16.2221	16.812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방재정수입은 2023년 7조 757억원, 2027년 16조 8,123억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70조 3,88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방재정수입: 2023~2027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	계
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	70,757	147,988	154,795	162,221	168,123	703,88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국회예산정책처	행정비용추계과
과장	임준기
추계세제분석관	정현하
연락처	02-6788-4831 sable@nabo.go.kr
